

2026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공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8월
- 신청기간 : 2025. 12. 8.(월) ~ 12. 31.(수) 18:00까지 마감기한 엄수
- 사업비 : 350백만원
- 대상사업 (세부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인테리어, 수리 등
예) 훌, 주방, 화장실 등 내부 리모델링(도배, 도색, 전기, 배수시설), 간판·샤시 교체 등
 - 경영지원 : 영업에 필요한 점포 내 장비구입·교체, 포장재 제작 등
예)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온풍기, 미용의자 등 (자산성 물품 및 렌탈비용 제외)

5.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5. 12. 31.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6. 지원한도 : 공급가액의 50% 지원 ※ 부가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시설개선 : 업체당 최대 **1,500만원**
- 경영지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예) 총 사업비 1천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인 경우

10,000,000원 - 1,000,000원(VAT) = 9,000,000원(공급가액)의 50% = 450만원 지원

II.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2025. 12. 31.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2.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경영지원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경영지원)
- 최근 5년 이내에 시설개선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시설개선)
- 최근 3년간 타부서 및 타기관의 유사과제 수혜자 및 지원 예정인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전년도(25년도)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국세,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 신규 창업, 사업장 이전 예정인 사업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만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이전한 사업장으로 신청,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 자부담금 미수용자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점포)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 면적, 장비의 경우
- 영업공간 외 주택 건물의 시설개선 신청 불가
- 컴퓨터, TV 등 자산성 물품 지원 일절 불가
- 「건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부적정으로 의결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업종인 경우
※지원제외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따름
-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3. 지원우대 (가점부여)

-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의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 청년 사업자 우대(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생활의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및 모범업소

4. 후순위 처리 대상

- 한 번이라도 해당사업 또는 타 부서·타 기관 유사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그렇지 못한 자와 상대평가 시 후순위 처리
- 건축물대장상 동일 위치 사업장에 동종 사업에 대해 5년 이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고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 전년도 선정 후 포기한 경우

III. 지원내용

1. 지원내용 및 금액 *** 세부사업 중복신청 불가**

세부사업명	세부지원 내용	한도액
시설개선 (내·외부인테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내외부 : 간판, 외벽 도색, 조명, 창호, 환풍기, 작업대, 출입문, 가벽 등 ‣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등 ※입식교체 시 테이블·의자 지원가능(음식업만 해당)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영업신고 면적(실제 영업 면적)에 한해 신청가능 -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시 해당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 고객이 직접 내방하는 점포만 가능(창고 불가) - 간판 : 신고·허가된 간판 1개만 가능 (돌출 간판제외,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시공 가능) 	최대 1,5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경영지원 (장비구입·교체, 홍보물·포장재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 제품 포장재·홍보용 리플릿 제작(타슈, 티올 등 단순소모품 제외) ※상호명 기재필수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PC, TV, 테이블, 의자 등) -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점포 내 시설·설비만 가능 - 업종별 영업에 필요한 장비는 심사 시 적절성 평가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2. 유의사항

- 세부사업(시설개선, 경영지원) 중복신청 불가
-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세부사업별 한도액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IV. 신청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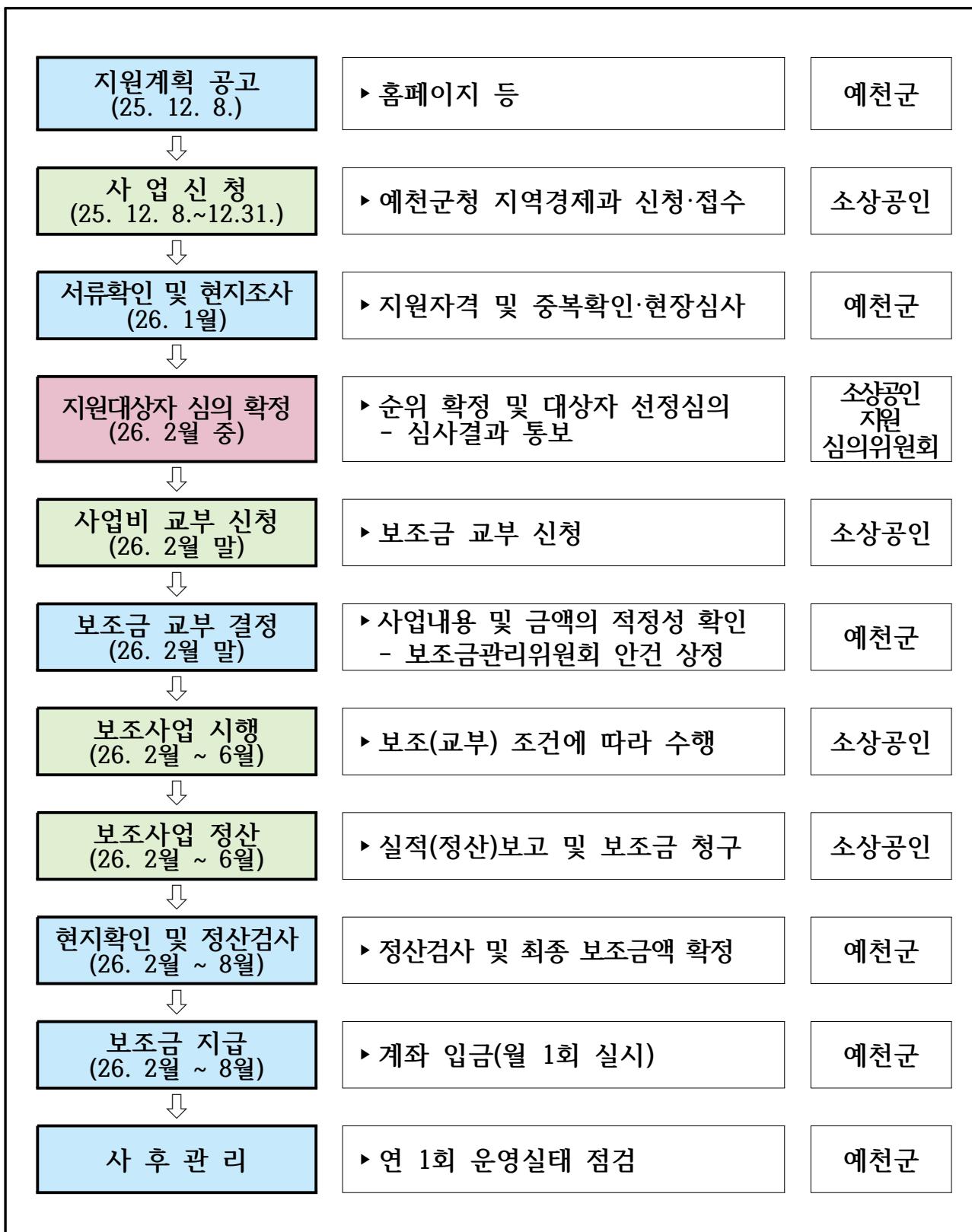
1. 신청기간 : **2025. 12. 8.(월) ~ 12. 31.(수) 18:00까지**
※12. 31.(수) 18:00 이후 서류 보완 불가
2.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접수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 (☎ 054-650-6853)
4.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고]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제출 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1호서식)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2호서식)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신분증④ 매출증명서류(2024년 전체 및 2025년 상반기)<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아래서류 중 1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⑥ 국세 -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⑦ 현황사진 (전면사진, 사업예정 장소 사진)⑧ 표준견적서 및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품목, 단위, 규격, 단가, 수량, 부가세 명시 및 견적서 발행업체 도장
추가 제출 (시설개선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건축물대장 1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부인 경우 → 부부의 납부세액 합산②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인의 사업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제3호서식)③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견적서(2곳 이상 비교 견적), 시공업체 관련 면허증,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내역서, 설계도면 등)*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시 해당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② (해당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증명서

* 신청기간 이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며, 모든 평가는 신청기간 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V. 추진 절차

1. 추진절차 일정(안)



2.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결정된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았더라도 요청 기간 내 보조금 교부신청 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 사업 취소 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교부 불가**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상세내역서 필수
(미제출 시 보조금 교부 불가)

3. 보조사업 시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함
- 사업자 본인과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단, 특별한 경우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을 제출하고 선정 가능.
- 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함. (간판 등)
- 사업주가 소요비용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관련 서류 제출하면,
검토 완료 후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급 (카드 · 현금 결제 불인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6년 6월말까지 반드시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4. 사업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승인 필요
- 세부사업 변경은 불가능함 (예 : 장비구입 → 시설개선)
- 보조금 결정 후 증가된 사업비는 신청자 본인부담
-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포기자의 경우 다음연도 신청은 가능)
-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5.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사업계획대로 지출한 내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내역서 및 노무대장 등)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비용은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해야함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지출 또는 현금지출·카드결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내역확인서 제출,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수기세금계산서 제출 가능
-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 납부 전까지 보조금 지급 불가

6. 현지확인 및 정산 검사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
- 정산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 확정 후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환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7. 지원 불가 및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사전승인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시 :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 기타 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사후관리 및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양도 시(장비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향후 관련된 사업 지원 불가 및 보조금 환수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지위승계로 동종의 업태와 종목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 지원업체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제1호 서식-앞면]

2026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개요

신청인	성명		휴대폰 번호	-	-	
	주소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종		개업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경북 예천군	상시종업원수	대표자제외/4대보험가입자 기준 명		

2. 사업 운영현황(★매출액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준)

매출액	원	점포면적	m ²
점포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 소유자와 부부관계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임차	보증금/월세 (해당시 작성)	원

3. 지원 신청내용(세부사업은 1개만 선택 가능)

세부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시설개선 □ (내·외부인테리어)	‣ 점포 내외부 : 간판, 외벽 도색, 조명, 창호, 환풍기, 작업대, 출입문, 가벽 등 ‣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등 ※입식교체 시 테이블·의자 지원가능(음식업만 해당)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경영지원 □ (장비구입·교체 등)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 제품 포장재·홍보용 리플릿 제작(타슈, 티올 등 단순소모품 제외) ※상호명 기재필수

-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 본 소상공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대표자가 직접 서명 및 날인)

2025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예천군수 귀하

[제1호 서식-뒷면]

4. 사업개요

* 평가 시 활용되오니,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내용	(규격, 수량, 횟수 등 상세히 기재)					
	-	-	-	-	-	-
	-	-	-	-	-	-
총소요비용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원	자부담금 (50%이상)	원	지원금 (50%이하)	원
제작업체 (총 : 개)	업체명			업체 연락처		

5. 추진계획

* 별도페이지 가능

구분	주요내용
사업장 소개 (사업장 현황 및 경영실태 등)	
지원 필요성 (사업장 개선 및 홍보 필요성)	

6. 사업장 모습(현재 사업장 내·외부 사진)

* 별도페이지 가능

내부 (매장 내부 전면)	외부 (간판이 보이게 촬영)

예천군 경영안정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2조의5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소상공인 해당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매출액, 사업장 4대보험 가입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정보	동의일로부터 5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자료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매출액(3년),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정보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취약계층 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2조의5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상북도, 예천군, 국세청(세무서), 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운영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위 모든 사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2조의5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대상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5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동의서

■ 임대인 인적사항

-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사업장 현황

- 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시설개선 신청내용

-
-
-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임차인이 2026년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성명 _____ (인)

※ 동의자의 인감도장 사용

- 붙임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예천군수 귀하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1. 사업자 현황(소상공인 선정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2. 외주(제작)업체 현황

업체명		연락처	
-----	--	-----	--

3. 공사(제작)내용

신청분야	<input type="checkbox"/> 시설개선 <input type="checkbox"/> 경영지원		
공사(제작)내용			
공사(제작)금액 (공급가액)		자부담금 (50% 이상)	지원금 (50% 이내)
변경내용	<input type="checkbox"/> 제작업체변경 <input type="checkbox"/> 제작비용변경 <input type="checkbox"/> 제작내용변경 <input type="checkbox"/> 상호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변경(전)		변경(후)	
완료예정 일자	년	월	일

본인은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 붙임 1. 변경 견적서 1부.
2. 변경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예천군수 귀하

[제5호 서식]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대표자명		연 락 처	
업 체 명			
신청분야	<input type="checkbox"/> 시설개선	<input type="checkbox"/> 경영지원	
세부내용			
선정금액			
포기사유			

위 본인은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지원결정이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웰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자연재해, 건강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차년도 본 사업 신청 시 최대 20점 감점